

제2023-16회
(정기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중 앙 집 행 위 원 회

일 시 2023. 8. 7. 21:00

장 소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가 링크: <https://kaist.zoom.us/j/89290945543?pwd=V0VobHlhTW5hQ1pTWUIEKzRtZGFQT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심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1호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부의 안건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개회 일시 2023. 8. 7. 21:10

폐회 일시 2023. 8. 7. 23:08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2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헌(결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결석)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결석)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결석)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결석)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결석)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결석)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결석)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지각)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조퇴)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조퇴)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조퇴)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사무팀장 박재은

○전문기구 측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현섭

의 사

(개회 21:10)

○의장 한정현: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 이창섭: 네, 안녕하세요. 간사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간사 대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 이창섭: 재적 중앙운영위원 21인 중 12인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10분 제2023-16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1건의 보고안건, 1건의 심의안건, 1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위키 및 ARA에 업로드한 소집 공고에서도 안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우들께 송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입니다. 본 회의는 제2023-16회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로 학생회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정기회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협력과 소통, 논의의 장으로서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회계감사, 격려금 등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더 나은 총학생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회의가 아니라 각 단위를, 소속 학부, 학과를, 동아리연합회를, 새내기학생회를 대표하여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KAIST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결권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회의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회의 구성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회의를, 더 나은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 사항입니다. 간사 대리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 이창섭: 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3-15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11시 05분에 개회하여 7월 25일 00시 41분에 폐회하였습니다. 7건의 보고안건, 4건의 심의안건, 2건의 인준안건, 3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와 제2호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안은 원안대로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구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로 발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소국위 번역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에 관한 소국위의 능동적인 조사·파악 방법에 관하여서는 학과 학생만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공식 소통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소국위에서 능동적으로 소통 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국위에서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를 공고 또는 공지하고, 공식 소통 매체가 최신화되지 아니하고 실제 활성화된 소통 매체와 다르게 지정한 경우에는, 소국위의 모니터링 또는 소속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공식 소통 매체를 명확히 파

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로 논의하였으며, 추가적·정기적인 번역 양식 안내 세부 사항에 관하여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카카오톡 채팅방 공지와 산하기구 대상 전체 메일을 통하여 번역 양식을 안내할 것을 제안하기로 논의하였으며 학부 생활관자치회는 본회 산하기구가 아니므로 번역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번역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3호 감사원 위원 결원 보충 논의안에서는, 감사원 위원 활동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 받는 것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적절성을 인정하고 활동비의 산정 기준은 감사원에서 제안한 2안으로 정하기로 논의하였으며,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대해서 관하여, 검직금지 조항 중 회계 담당자의 검직 금지 여부에 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원 위원의 업무 범위나 권한을 명확히 정리한 이후에 회계 담당자의 회계감사 참여가 회계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감사원에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제안하되, 피감기구의 기구장은 검직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논의하였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의 회계감사 참여안에 관하여서는 감사원에서 재고하되, 2023년도 하반기 감사원 모집 위원이 모집되지 아니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비례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차원의 논의를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중앙운영위원회로 발의하거나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의 순서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를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보고안건 제1

호, 심의안건 제1호, 논의안건 제1호의 순서와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먼저 7월 25일 오전 10시 제2023-6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27일 오후 12시 낮 12시입니다. 교무처 및 학생정책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27일 오후 8시 제2023-4회 집행조정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7월 27일 목요일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회장님이 참석한 교무처 및 학생정책처 회의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의를 통하여 GPA의 백분위 점수 환산 방식 개선에 관하여 교무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회의에서 나온 피드백을 바탕으로 7월 31일 월요일 중 수정본 자료를 제출하여 교무처와 그리고 학생처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수렴하여 현재까지 해당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 타대학 특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통해 자료 보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교무처에 전달하여 교무처 그리고 학생처 주관의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별도로 질문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2.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19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감사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낭독해 주시고 이후에 앞서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시행세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원장 김현섭: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학우들의 감사원 위원 참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도에 모 자치단체에서 감사원 위원과 자치단체 국원을 같이 하시던 분이 조항 때문에 탄핵을 당하신 경우도 있고 하여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게 겸직금지 조항이 감사원 위원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 모집을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서 감사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통해서 겸직 금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들고 왔습니다. 위원의 수가 감사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위원 수 8인보다 적어서 이제 원활한 회계감사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정기감사를 시행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요원을 모집하고 인준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발의안을 들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발의안을 통해서 상반기 정기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 결원 보충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금지 대상을 피감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이는 현재 감사원을 보시면 감사원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미 직전 학기까지 모 피감기관들의 회계 담당자이거나 회계 담당자를 해봤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의 회계 담당자를 지금 와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으로 감사위원을 해가지고 감사를 했던 학기가 저번 학기인데 저번 학기에 제가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두 개를 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제가 그 해당 감사, 해당 제가 있던, 제가 (감사보고서를) 썼던 그 피감기관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현재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미 피감기관에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회계감사에 감사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이거를 막는다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피감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제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저번 중운위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들에 보면 이제 피감기관의 장도 겸직 금지에서 제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제외하기에는 현재 이 안건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저희가 감사위원 임시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모색하고 하기에는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걸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피감기관 장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피감기관장까지는 겸직금지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10조의2를 신설해서 임시위원의 모집 자격, 역할에 대해 규정하여 임시위원을 모집하고 인준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4조는, 제4조 또한 개정할 것인데 이는 저번 감사, 아니 저번 중운위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은 별첨1로, 일부개정

세칙안 신규조문대비표는 별첨 2로, 개정 경위 및 목적은 별첨 3으로 부칙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별첨1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은 화면으로 보시는 내용과 같으며, 별첨2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규조문대비표, 별첨3 개정 목적 및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3 개정 목적 및 경위를 보면서 감사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개정 목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원장 김현섭: 네, 먼저 제4조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4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제4조의 1항으로 바꾸고 제2항, 제3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계 담당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요. 회계 담당자라는 용어는 현재 재정운용세칙 제17조제2항에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 회계 책임자라는 용어가 지금 자주 쓰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회계 담당자와 회계 책임자를 구분한 이유는 이제 저번 중운위에서 나왔듯이 이제 회계국을 두거나 회계부를 두거나 아니면 재정이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이 제17조제2항의 징계 대상이나 아니면 이제 회계 총책임자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회계 책임자라는 용어를 추가하였고요. 회계 담당자, 회계 책임자를 구분하였고요. 이상입니다.

아래는 감사시행세칙 제10조의2를 추가 신설한 것인데 제10조의2는 저희가 이제 임시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나 임시위원에 대한 이 회칙상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임시위원의 모집 방식 그리고 임시위원의 임기,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를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사위원의 의무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감사위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관련한 매뉴얼의 수정이나 아니면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 업무는 학기 초에 나왔듯이, 그 뭐냐, 잠시만요, 용어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는 직무 감찰입니다. 임시위원의 경우에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매뉴얼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이 매뉴얼 상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회계 담당자들이, 직전 학기 회계 담당자들이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 꽤 많았기 때문에 금지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감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시위원이 직무감찰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미 임시위원이 직무감찰을 당하더라도 그 임시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감찰을 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4조 겸직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였는데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재직 중”을 “임기 중”이라고 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하였고 “피감기관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부터의 부분을 “피감기관의 장”만으로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조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 다만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을 예외로 둔 범위에서 피감기관의 장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겸직금지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의 업무 범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업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겸직금지의 대상자의

범위를 피감기관 장만으로 좁혔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감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감사원에서 판단하여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제14조에 있는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안건지에 개정 취지와 주요 골자, 3개의 별첨자료, 참고사항, 관련 규정을 확인해 주시면서 검토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 한 3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우선 오탈자 확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별첨 제2, 3 모두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10조의2 임시위원 제2항의 경우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에서, “에서”라는 조사가 이렇게 붙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일부개정세칙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오기입이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은 수정하는 김에 하나 한 가지 더 여쭙보고 오탈자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별첨1 일부개정세칙안에 이제 문단으로 따지면 세 번째 문단의 마침표가 지금 이게 온점 글 마침표가 아니라 지금 작은 따옴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정확히 어느 부분... 제14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만, 공고 전에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에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안건지에 올라온 뒤로 어제 쪽 확인하면서 이렇게 발견했는데 혹시 이 뒤에 감사원에서 오탈자 전체 한번 확인하고 제출해 주신 건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감사원 원장 김현섭: 양식을 맞춘다고 하였는데

오탈자의 확인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의견도 받고 해당 내용들을 반영해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시간까지 검토 및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드린 시간 다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의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한 위원이 계실까요?

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해당 세칙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감사원에서 위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신속히 안건을 상정한 감이 있는데, 안건을 부의한 감이 있는데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안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한 이후에 안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안건의 수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의 별첨1의 개정문에서 제10조의2제2항의 “전학대회에서”를 “전학대회에서”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모호한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이 오탈자를 조사가 ‘해’에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에서로 고치는 수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찬성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이나 채팅 등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찬성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동의 제출자 1인과 이외 1인의 찬성으로 해당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해당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화면으로 보시는 “전학대회에서”를 “전학대회에서”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기하실 때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해' 애서를 '개' 에서로 오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해당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의 개정문은 제10조의2에 대해 제2항에서 (“전학대회에서”에서) “전학대회에서”로 수정된 것으로 안건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1호에 표결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의 표결을 게시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다까? 그러면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은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찬반 중앙운영위원 이름은 끝에 실음)

○의장 한정현: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한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안건 제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원 원장 김현섭: 네, 감사합니다.

3.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의장 한정현: 논의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해당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학생회칙 제166조제3호 및 제177조 등에 따른 격려금의 폐지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려금 또는 격려 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을 말합니다.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발효된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격려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헛수로 치면 올해 5년째 시행 중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학생회칙 제166조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상반기 격려금은 학생회비의 20%, 11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 하반기 격려금은 학생회비의 20%, 1160만 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격려금 이월금은 31원으로 확인됩니다. 문제 상황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의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 납부 비율 감소 및 격려금 재정 악화로, 2018년 기준 약 월 당 8만 5천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로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서 필요한 재정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도 상반기에도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의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안의 총지출이 중앙회계보다 약 730만 원을 초과하여, 여러 차례 기구 별 회의를 통해 예산 지원을 조정하였습니다. 730만 원은 격려기금인 1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격려기금을 전용하게 된다면, 본의 산하기구의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원하는데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규모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격려금 폐지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학생회비 납부를 감소, 물가 상승, 상설위원회 등 산하기구 수익 사업 중단 등으로 본회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서 필요한 재정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격려금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매 학기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중앙회계지원금 등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본회 산하기구 활성화와 본회 의사결정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칙 제177조부터 제180조까지의 규정 및 재정운용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칙 제165조 및 제166조를 일부 개정하여 격려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로는, 2023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안 중 격려금 비율 20%에 상당하는 금액 1160만 원은 학생회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 전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의 전용 비율은 기층기구회계 분배안 및 중앙회계 분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타 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9월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4분기 정기회의에서 격려금 전용을 의결하고, 이후 기층기구는 증액된 기층기구회계에 따라 추가로 기층기구회계 지원금을 받으며,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중앙회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을 일부개정하여 격려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사항으로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격려금 지급에 사용되던 예산 학생회비의 약 20%를 기층기구회계 지원금과 중앙회계 지원금 등으로 전용하여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안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기구별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안을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의 격려금에 관한 규정들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 시간 및 질의 응답 시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에 안건을 검토해 주시고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다면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안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셔야 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원안에 대해 찬성한다 혹은 어떠한 이유로 원안에 대해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신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적인 반대 입장입니다. 격려금이 없어지면 저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자치단체의 장 혹은 KAIST 학생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고 그거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후배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환경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 격려금의 정의를 보면, "격려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학생분들의 생활을 보았을 때 학교에서는 학자금 14만 5천 원을 매달 지급하고 이 금액만으로는 한 달에 여유롭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돈이나 개인 사비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으로 본인이 수입을 창출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봄학기 기준 18만 5천 원을 가지고 이걸로 여유롭게 살아가 아니라 매달 30시간씩 일해서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난 학생회장도 하고 싶고 열심히 학생 사회 위해

활동하고 싶으면 그럼 그 친구한테 단순히 우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열심히 그냥 너 시간, 잠자는 시간 쪼개서 활동해라가 아니라 격려금 18만 5천 원 받으니까 한 달 기준으로 4만 원, 5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한 달에 원래 30시간 아르바이트 할 거 25시간만 아르바이트하고 남는 5시간은 학생회 활동에 투자하고 그 시간에 네가 진짜 너네 학과 혹은 네가 속한 자치단체를 위해 일해라 이게 원활한 직무, 직무수행 그리고 책임감 고취를 위한 격려금 지급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격려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례로 대학원 총학생회를 보면 거기서는 학생회비에 상당 부분 저희 우리 지금 학부 같은 경우는 20%를 책정했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격려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에 활동비로 지급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데 여기 충분한 비용이 보장이 되어야 실제로 그 학생이 더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활동 실제 본인이 과 그리고 학생 사회 단순히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 성적이라든지 그런 학생으로서 하는 공부 외에 다른 활동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격려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욱이 지금 문제 상황으로서 말씀해 주신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함은 이 격려금 제도 폐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특히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느 단체에서는 격려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이 단체의 격려금이 많이 지급될 경우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혹은 우리 원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의가 오가는 과정은 당연히 시간이 할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격려금 상반기, 하반기 각각 얼마씩 받는지 아시나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제가 봄 학기에 받은 금액을 저희 다른 우리 중앙집행위원분들을 위해 따로 빼두어

서 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저희 전학대회에서 예산안 다 심의했는데 2023년 상반기 격려금이 인당 얼마 받는지 모르시나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회장 기준 18만 5천 원 아닌가요?

○의장 한정현: 회장 기준이 아니라 1인당 약 18만 원 정도이고, 6개월치가 18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3만 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학생회가 격려금 한 달에 3만 원을 주면 더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부 총학생회 재정 구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르고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상세한 비교 없이 구체적으로 가져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리과학과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 스스로 음소거 해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채팅으로 주셨는데, 글썬요,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저도 보이지 않네요. 사무팀에서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음소거 해제 요청은 뜨는데 음소거 해제 이런 키가 보이지 않네요. 일단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채팅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봐도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런 건 있는데 참여자가 음소거를 해제 못하게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간사 대리께서도 발언하셨기 때문에 개인 디바이스 문제일 수도 있어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음소거 해제되시나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저는 음소거 해

제됩니다.

○의장 한정현: 희한하네요. 제가 계속 설정을 봐도 호스트가 참가자의 음성 해제를 막는 방법은 안 보이는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이제 음소거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아무래도 디바이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시간이 다소 지체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총학생회장님과는 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앞으로 학생 사회를 누가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격려금 폐지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이제 2023년 KIND라는 총학생회가 출범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온전히 각 기구의 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유의미한 것들을 꼽아보지면, 일단은 활동 확인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단순히 책임 분산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저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학생 사회를 더 잘 굴리기 위한 방법으로 좀 더 회의 주기를 더 짧게 해가지고 좀 더 자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저희 대표자들로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리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찬성해서 그런 회칙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회칙개정특임위원장으로 이 안건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논의되고 있냐하면 이제 자치기구의 어떤 의결기구의 이 자치기구의 장이 보고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격려금이 폐지되는 것이 사실 맥락상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각 자치기구의 단체들이 2022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책임감과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그에 비해서 어떤 돌아오는 리턴 값이 좀 적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금이 좀 한 달에 3만 원 이런 것이 이제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면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근데 그래서 군인 월급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현역으로 입영한 군인들이 실제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이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준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게 실용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급 아니면 월급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는지 보다는 그 격려금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까지 포기해버리게 되는 게 과연 기구장들에게 좋은 것일지... 그러니까, 단체로서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렇게 달갑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격려금을 이제 비율을 줄이는 것 정도는 아니면 이번 학기 한에서 전용한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나, 폐지를 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칙을 바꾸는 거는 앞으로의 학생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에 또 다른 총학생회가 출범하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학생 사회를 운영하고자 할 수 있는데 회칙이 그렇게 돼 버린 상태에서 출발해버리면 이제 미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힘들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격려금을 폐지하는 것, 학생회칙에서 격려금에 대한 것들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소 변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정정을 먼저 하면 회개특위에서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정정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해당 관련 논의를 한 회의에서 한 번은 안 오셨고 한 번은 논의에 참여를 안 하셔서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

은데 자치기구 회장단과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현재 집행위원회에 자치기구 의결 기관으로의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갈지, 두 개를 같이 없애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훈시적 규정으로서 이걸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거를 해야 될 의무를 강력히 부과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두 번 회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회개특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 다시 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확인서나 회의 주기 개편 등으로 로드가 늘어나는 방향성에 무언가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을 없애는 것은 리워드로 보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단순히 이번 학기에 한정해서 전용하는 의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율을 줄이는 식으로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르더라도 회칙 자체를 바꾸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도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를 그동안 너무 활용하지 않아서 이거를 스킵하고 폐지로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전용하는 의결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저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이 안건을 다룬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이나 아니면 부총학생회장님 같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의견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좋다고 말씀하

신 이번 학기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현재 총학생회장단은 격려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부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봄 학기 활동을 이유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게 없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스스로도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함부로 추측하기로는 격려금을 없애자라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그래도 나한테 한 학기에 18만 5천 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실행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처럼 봄 학기처럼 실행예산요구서에 있는 그런 학 단체의 그런 요구하는 예산들을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격려금을 그쪽으로 지원하자 이게 우리 학생 사회를 위해서 더 낫다라고 이렇게 논의 논의가 오간다면 거기서 정말로 격려금 혹은 이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격려금 폐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각 단위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금을 받는 내가 이거의 폐지로 인해서 뭔가 페널티가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혹은 반대의 입장이나 대의를 생각해서 말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 총학생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리워드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격려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건 되겠으나, 격려금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격려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것이 별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로서, 대표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대표자로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정도가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왜냐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저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했나면요, 물론 이제 학생회장이라는 어떤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영원히 하게 될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이 하게 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직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단체에서 그 직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직이 그 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으면은 과연 그 직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라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면 그 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인가라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어떤 실제 사회에서도 이제 특정 직종들이 기피되거나 아니면 선호도가 분명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재정이 부족하면 격려금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좀 더 좋은 해결책, 아니면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면 좀 더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회비 인상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게 그렇게 물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다시피 KAIST에서 내야 하는 학생회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생회비 인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신 것이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이에요.

○의장 한정현: 우선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저도 그런 취지로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의 마지노선이 내가 이걸 받고 있기 때문에 문에라기보다는 내가 이 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을 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 혹은 폐지가 되는 것이 어렵겠다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학생회장을 하면서 받는 게 격려금 말고 없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 간부장학금도 총학생회장단 및 창설위원회 위원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에게 주어지고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혹은 전문기구장 특별기구장 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고 각 과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지원서, 추천서 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인성장학금을 수령을 합니다. 학생회장을 한다고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받는 리워드가 비단 격려금뿐만이 아닌 건 명확할 텐데 격려금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격려금 밖에 받지 않는데 이것도 없어도 안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이 나오는 게 다소 의아합니다.

학생회비 인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2016년, 17년 이 때도 논의는 진행됐으나 실제로 인상은 안 됐었고 학생비가 인상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으나 격려금을 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안이고 또 전체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사안임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셨냐라고 여쭙보신다면 인상도 충분한 가능성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나 훨씬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좀 더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효능을 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안건으로 올리거나 임기 중에 처리할 생각,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인성장학금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간부장학금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는 아마 총학생 회장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히 공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오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확실히 '간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정말 학생 사회에서의 어떤 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고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인성장학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인성장학금이 학생회장들한테 주기 위한 학생 회장들 혹은 학생회장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수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려금이라는 어떤 회칙상 총학생회 회칙상에 이제 혹은 간부 장학금처럼 이제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는, 어떤 명확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인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대상들이 원칙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은 성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회장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아니면 혹은 학생 회장이 대부분이 받는다는 것이 이제 격려금 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간부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간부 장학금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제가 알기로는 총학생 회장단에서 오로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도 오로지 총학생회장단만 볼 수 있는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어떤 총학생회장단이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간부 대상자의 선정 여부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어떤 수혜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격려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간부장학금과 인성장학금을 받는 것이 사실 격려금의 폐지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나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충분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인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생각하신 어려운 이유가 있으실 텐데 왜 그게 이제 격려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곳에서는 그 어려움이 똑같이 생기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의 절대적인 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너의 것이어야 했었던 돈이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 수의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인성장학금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부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인성장학금의 봉사 부문에 총학생회 산하기구 활동 등으로 되어 있어서 격려금과 간부장학금 내지는 경우 유사하게 총학생회 임원 내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 거 맞습니다.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있어서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간부장학금만큼 100%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부장학금은 지원을 안 하셔서 헛갈리신 것 같은데, 저희 총학생회의 메일로 받았고 총학생회장단 메일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업무를 위임해가지고 총학생회장단이 처리하는 것이지 이번에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총학생회 기조에 따라서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단지 총학생회장단에서만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같은 이유에서 격려금도 회칙의 대상자가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체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단체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단체한테 가는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부장학금과 확실히 더 개런티가 된다는 면에서 차등은,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을 수행하는 일이니 간부장학금은 총학생회

장단이 정하는 거니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격려금은 여기 써 있는 지급 대상자의 각 호의 집행기구가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전문 기구가 쓰여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학생회비 인상은 학생회비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가치랑 격려금이 본회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한 논의하는 것과 격려금 폐지안을 논의하는 것이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단순히 모수가 적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가 학생들에게 지니는 가치는 본인인 만큼의 기회 비용을 냈을 때 학생회로부터 그 이상의 효용을 받을 수 있는가 효능을 느낄 수 있는가인데, 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총학생회에서 그런 믿음이나 신뢰를,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봤었고, 그동안의 인상 안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에게 인사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약간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물리학과 학생회장께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격려금이 존재하는지 여쭙보셨는데, 모든 대학을 다 볼 수 없으니 앞선 회칙 개정 등을 할 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의 대학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POSTECH, UNIST,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대 학교 정도를 해봤을 때 격려금 혹은 그에 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사실 활동비랑도 좀 개념이 다르긴 하나 이렇게 수당 내지는 임원들에게 학생회비의 출처를 둔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 KAIST 학부 총학생회 밖에 없습니다. 레퍼런스 대학들 중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만 뭔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른 대학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단과

대 학생회장을 한다거나, 학과 학생회장을 하면 해당 학과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줍니다. 이게 어떤 대학은 생활비 명목으로 저희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거나 부회장이면 반액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만 살펴봤을 때는 레퍼런스 대학들에서는 POSTECH을 제외하고는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현재도 그 제도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는 한 번 더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다른 학교의 경우에 경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레퍼런스 대학의 경우에는 격려금 혹은 그 유사한 제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항상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KAIST에서도 POSTECH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등록금이 존재하는 종합대학들처럼 학생회비를 출처로 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한정현: 그것의 대상이 현재 격려금을 받는 대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대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도가 KAIST에 도입될 만한 포텐셜이 있는 건지를 여쭙보시는 걸까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꼭 전원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현재 격려금 수혜를 받는 인원들에 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략 대총 학생회장들, 혹은 이제 대표자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원들에게 격려금이 폐지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다른 플랜B를 마련해 볼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겁니다.

○의장 한정현: 네 어떤 질문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간부 장학금이 원래는 총학생회장단만 월에 50, 100을 받다가 2021년도 하반기에

대학원 총학생회랑 같이 요청을 해서 총학생회장단을 각각 200, 150으로 증액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원 총학생회가 약 20명 정도 학부 총학생회가 약 17명 정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걸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재원을 활용해서 총학생회 임원진들이 장학금을 수령했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격려금에 더해서 새로운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격려금과는 무관하게, 격려금을 폐지한다고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금 폐지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다못해 이번에 격려금의 경우에도 간부장학금 하반기 논의를 할 때 지금 저희가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고 중운위에서 논의한 거는 상반기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다시 논의를 하거나 하다못해 상반기처럼 하겠다 하더라도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들어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간부장학금을 T/O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식으로 보장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번에 감사원에서 활동비를 신설한 것처럼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에 대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이나 장소 등 그리고 기준들이, 스탠다드가 정해진다면 그에 대한 수당 혹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지금 감사원에서 선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감사원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또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이제 임기 내에도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시 시행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하고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구의 다른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위원회 회의, 외부 회의 같은 데 보면 회의수당도 지급되는데 회의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격려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의 취지와 너무 멀어져 왔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곳에 재원을 사용을 하고 책임

감을 고취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맞지, 이 격려금 제도를 계속 고수하면서 대상자 정하는데 서로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쏟는 것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폐지를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워드를 받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봉사 정신을 갖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럼 남는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부족한 곳이다 더 지원을 해주고 그와는 별개로 각 활동에 대한 리워드는 다른 방법으로도 드릴 수 있고 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금과 무관하게 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추가로 의견을 더 조속히 받도록 하고 해당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물리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다른 학교에 격려금이 존재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으로 다른 학교에 격려금은 없지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는 근로 장학금을 학생들을 근로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이를 수입으로 삼아 다시 이를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 중앙집행위원회 활동으로 활동하는 학생들 중에 유형1 유형2 내용으로 근로장학생 명목의 활동비를 받고 그리고 이를 매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한테 25만 원씩 국장단에게 15만 원씩 결론적으로 격려금은 아니지만 활동비 명목으로 이렇게 금액을 줍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학교와의 차이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해서 격려금이 나가는 거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학금으로 하여서,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선정되는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예전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예전에 학생회비를 근거로 이렇게 활동비가 나갔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것이 정확히 몇 년도까지 유지됐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채팅을 통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학교의 재원을 활용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서울대학교는 현재는 유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의 자료가 언제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도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공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회의 논의의 결과를 폐지안, 폐지 안하기로 함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행돼야 될 사항들까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의 결과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부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더 주시면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물리학과 학생회장께서 학기 초반에 격려금 분배에 관해서 회의가 길게 진행되었던 만큼 격려금을 없애고 활동비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앞으로 중운위나 전학대회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학과 학생회장께서 "물리학과 학생회장님의 의견을 참언하자면 격려금을 없애는 것이 '매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의장 한정현: 아마 매년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신 데에는 회의가 길어졌던 것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헛수로 3년째 회의를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속기록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통상 격려금 논의가 상당히 긴 축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

려금을 논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격려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격려금 논의 과정에서의 불필요성을 가진 속성들이 제거된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회의 수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참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논의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폐지하기로 논의함" 하더라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 안하기로 함"으로 결론을 내기에도 논의안건의 성격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폐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식으로 논의를 마치거나, 물리학과에서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격려금 자체는 폐지를 하더라도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활동비를 꼭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격려금 무조건 없애고, 활동비 조건 만들고 이건 아니고요. 격려금 폐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중운위에서 합의를 하되, 그에 대한 전제 내지 선결 조건으로는 우리가 활동비 등 리워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총학생회의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후배들과 앞으로 이 직을 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개런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리워드를 개런티해 주기 위해서, 리워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활동비 등에 후속되는 조치가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서 공유해 준 자료들도 다들 보셨을 것 같고요, 논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정도로 보일 것 같아서. 결국에 이 총학생회에서 직을 수행하는 분들께 드리는 한글로 하면 보상이죠. 보상에 대한 방향성을 기존에 있는 격려금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방향성을 격려금이 아니라 활동비 쪽으로 수정을 할지 방향성을 틀지를 논의의 결론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해주고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격려금 제도의 방향성에 동의하며 그 격려금 제도를 유지하자 1안,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책임감을 고취하고 직무수행을 돕는 방법으로 격려금이 아니라 활동비로 봐야 된다. 방향성이 격려금이 아니라 활동비다 라는 거에 대해서가 2안이 되겠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각 투표를 받고 그것을 이 논의안건의 결과로 가져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되는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안으로 돼서 격려금의 방향성에 중앙운영위원회가 동의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결론중한다면 다음 회의 때는 격려금 분배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2안, 격려금의 방향성보다는 활동비의 방향성이 더 적합하다, 보상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활동비에 대해서 근로 장학금이 됐건 아니면 다른 재원을 활용한 활동비가 됐건 간에, 그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고 안건을 올리는 방향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지금 그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려금과 활동비의 차이가 자원 마련에 있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자원 마련이 맞고요. 본질을 본다면은 격려금은 이제 책임감을 고취하는 거고 그러니까 격려금 논의안에서 결국에 나왔던 게 누가 누가 더 많이 일하냐라기보다는 이 기구에서 하는 활동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격려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거였다면 활동비는 결국에 이제 근로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시간이나 그 양에 비례하겠죠. 그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차이가 맞고요. 그 의미를 본다면, 의미에 있어서 격려금은 기구나 그 직 자체를 보고 주어진 돈이라면, 활동비는 실제 본인이 일하는 시간이나 강도에 종속돼서 나오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계속 이어서 발언해도 될까요?

○의장 한정현: 네네.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활동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업무의 시간이나 강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학생회장 혹은 어떤 자체 기구의 장이 시간이나 어떤 강도로 측정할 업무의 양을 그렇게 환산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와 격려금의 차이가, 활동비는 어떤 직책에 수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격려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 누구한테 이 활동비 혹은 격려금을 주어야 하느냐가 논의 대상인 거고 그 논의 대상이 결정이 되면 원래 그대로 쪽 지속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단체가 새로 신설되거나 혹은 당장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단체에서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지금 추가되거나 빠져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항상 격려금 분배 논의가 이루어져, 더 오랜 시간 다뤄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년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활동비로 빼자 이런 부분은 잘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원 마련에 있어서 학생회비가 아니라 학교의 재원을 통해 활동비를 마련하자 활동비 혹은 격려금을 마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을 학기의 경우에는 우선 총학생회장단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 근로 장학금 혹은 해당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런 근로 학생의 경우에는 TO가 각 학과 혹은 각 팀별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가을학기에 당장 그렇게 여기 계신 위위원장 분들 혹은 다른 기구의 장분들께 모두 다 격려금 혹은 그것을 받던 분들께, 이런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장 가을학기에 격려금을 폐지하고 근로 장학생으로 바로 해당 금액 혹은 비슷한 양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명목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첨부해 드린 서울대학교 링크에서도 보시다시피 근로 장

학생으로 선정을 해서 이 활동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타 근로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근로장학생에서 소득 분위로 인해서 선정에 제한이 되는 경우, 이런 데에서 애로사항도 많아서 해당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의 골자는 근로 장학생이 아닌 활동비 명목으로 아예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정리하면 이제 활동비로 바뀔 때 재원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대상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도를 따지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학생회장이어도 10시간 일하면 1만 원 주고 20시간 일하면 2만 원 주자 이게 아니라요, 근로 장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간과 장소를 따지는 걸로 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은 부득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근로 장학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반 근로도 있고 특별 근로도 있고 국가근로도 있고 한데 소득분위 따지는 게 국가근로고요. 일반 근로랑 특별 근로라고 해서 각 팀 별로 부서별로 배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근로 카드 작성이 다 완료 안 된 상태여서 가을학기에 대해서도, 물론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0% 모든 과에 대해서 모든 학과의 행정팀에 모든 학과 학생회장들께 근로 장학생을 한 자리씩 달라 라고 다음 주까지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말씀해 주신 상황처럼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로 가나 특별 근로로 가나 일반 근로로 가나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함께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쪽으로 가면 애로사항이 많고 이쪽으로 가면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아예 가지 말자라는 방향보다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중에 나온 의견이고 제가 근로장학생에 대해서 학교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만 논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에

대해서까지 오늘 회의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선 내용처럼 근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장 가을학기에 어렵다라는 거는 아직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내용이 맞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도 시간이나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보면 회의 출결 등이 그 예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서기비 지급할 때 회의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처럼 회의 출결을 통해서 출석한 회의의 시간에 비례해서 근로비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근로비를 지출하는 주무부처랑 장학복지팀이랑 각 유관 부서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학과 행정팀장의 소관 부서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에 결론은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려금을 현행과 똑같이 유지할 거면 8월 중에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격려금 분배안에 대한 구성안을 가져가서 전학대회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결론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 절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부족한 자원, 부족한 금액에 한정해서만 전용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현행과 같이 격려금을 배분하는 방법도, 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오늘 논의를 마치면 그에 대한 후속 안건들을 차회 중앙운영위원회들에 단계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가을학기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하겠는데요. 1번이 현행 유지해서 3월 달에 임시 중운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분배안을 논의하고 3월 전학대회, 4월 전학대회 거쳐서 격려금 분배안을 확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9월, 한 번에 정해주면 더 좋겠죠, 9월 전학대회에서

격려금 분배안을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1안이고요. 2안은 무언가 리워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것이 격려금의 방향성이 아니라 활동비의 방향성으로 가서 활동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이를 정해야 된다가 2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장학생 등으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다음 회의까지 준비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은 절충안인데 실행예산요구서 등을 받은 이후에 다음 임시 중운위까지 중앙회계 분배안과 기층기구회계 분배안을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씩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추가경정심의를 받는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1, 2, 3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거나 조금 더 신속한 진행을 원하신다면은 가투표를 받아서 저희가 정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사 진행에 관해서까지만 의견을 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의견이 없으므로 가투표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 구두로 설명만 듣고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텍스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안, 현행 유지. 차회 회의에서 2023년도 하반기 격려금 분배 논의안 심의. 2안,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 변경하는 방법 추진. 차회 회의에서 활동비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가능 시 기준이나 대상 논의. 3안, 2023년 하반기에 한하여 본회 산하기구의 부족한 사업 예산을 격려금에서 전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리인은 없기 때문에 중운위원 14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운위원 14인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글폼으로 진행할게요. 사무팀장님, 1안 2안 3안에 대

해서 제가 텍스트로 써드린 내용을 각각 구글 폼 설문 내용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기권애다가 1안 2안 3안 넣으시면 됩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추가로 의견 더 있으시면 의견 받겠습니다.

저희가 표결 개시 선언 이후에는 논의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가투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주셔도 괜찮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투표결과로 2안이 선정되었을 때 활동비로 우리 학교 측의 재원을 마련해서 1100만 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학생분들께 나눠주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만약에 학교에서 당장 가을 학기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안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아 네, 모호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디폴트로 1안으로 분배 논의안을 가져가되, 그 논의안에서 전용 의결에 대한 논의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2안으로 했는데 변경이 안된다 하면 그럼 1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었을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답변이 됐습니다. 그럼 투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보면 혹시 의장님께서 2안이 지금 당장 가을 학기에 1100만 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의장 한정현: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자투표 준비됐기 때문에 가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들께서는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셔서 논의안건 제1호에 제1안 2안 3안에 대한 가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Zoom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총 16명, 참관 등

을 제외하면 총 14명인데, 저 포함해서 지금 8명 투표했습니다. 나머지 중앙운영위원분들도 신속히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 분 투표 안 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호명하고 재석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 11명으로 확정해서 결과 공유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재석해 계신가요? 가투표 참여 안 하셨는데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과 재석해 계신가요? 투표 참여 안 하셨는데 재석해 있다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과학과 재석해 계신가요? 앞서 의견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재석해 계실 것 같은데 투표 참여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회의장에서는 거수하면 안한 사람을 셀 수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실에 있는데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투표에 조금 온라인에서의 효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다 추가로 투표하신 내용 없고요. 발언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11명으로 가투표 내용 확정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무팀장님, 가투표 카운트 하셔가지고 1안 2안 3안이 각각 몇 명씩인지 채팅으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회의에서 하는 것처럼 1안 몇 명, 2안 몇 명, 3안 몇 명, 이렇게 결과 공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11명 중 1안 2명 2안 9명으로 2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논의안건 제 1호 격려금 폐지 논의안에 대해서는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추진하여서 차회 회의에서 활동비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가능성, 변경 가능 시 기준-대상 등에 대해서 논의하되 활동비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안의 내용대로 진행하여 2023년도 하반기 전학대회 및 의결기구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진행하

는 것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총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마지막으로 일단 저는 2안에 투표했고 관련해서 의견을 남기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 상황 혹시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그냥 안건에 대한 의견인 거죠? 논의 결과 정리에 대한 의견인가요 아니면 안건에 대한 의견인가요? 아니면 가투표에 대한 2안 찬성 사유나 추가 의견 이런 건가요?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문제 상황 확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의장 한정현: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학생회장 강동재: 2안으로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액션 아이템으로서 학교에서 결국 해당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시 1안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 상황을 명시해 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함,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활동비로 변경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또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상황이 이어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730만 원을 초과한다, 이 금액은 결국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격려금에 해당하는 1100만 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오겠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사업 집행하는 데 730만 원이 부족하면 그걸 받아오겠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2안에 동의한 건 우리 학생회비로서 학생들이 내주신 금액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우리의 활동비로 쓴다는 게 좀 불편하다면 총학생회장단이, 지금 현재 총학생회장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재원으로서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2안에

투표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가을 학기 2023년 가을학기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바로 진행이 가능할지 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일단 이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근로장학생 선정, 근로 장학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국장은 T/O 하나, 팀장은 0.5개씩처럼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학생 한 명을 선정해 두고 한 명이 받은 장학생을 2인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로 장학생보다는 어떤 학교에 있는 전체 활동비라는 큰 명목으로 서울대학교 게시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논의 내용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은 것 같은데 비단 학교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활동비를 만드는 방향에 들어가구요.

격려금의 본질 자체가 일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근로의 성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달라서 격려 목적으로 줄 때의 기준과 근로에 대한 지불을 하는 기준은 다르겠죠. 구체적인 정도도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금 논의할 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일을 더 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단체도 저만큼 일하는데 우리도 나와야 된다, 우리도 받아야 된다 식으로 소위 말하는 자존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본질에 있어서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에서 730만 원 더 받는 거랑 재원 바뀌어서 730만 원 지원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장학생으로 갔을 때 쓰이는 730만 원은 근로비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비가 남는다고 저희가 사업비로 바꿔달라고 못하죠. 근데 근로비를 근로비대로 쓰고 근로비를 학교 돈을 끌어옴으로써 총학생회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을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고요. 출처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100%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730만 원을 학교에서 가져오느냐 학생에 비해서 전용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격려금을 없애고 근로비로 전용하면은 730만 원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지원팀에 730만 원 달라는 거랑 학생지원팀에서 근로비 730만 원 달라는 거랑 엄연히 다른 요청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의 결과로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여 차회 회의에서 활동비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가능 시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되, 2023년도 가을 학기에 활동비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안에 필요한 절차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실까요? 별도로 추가 의견이나 이의 없으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논의안건 제1호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신소재공학과.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는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이상으로 금일 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 성원 점검하겠습니다.

재석한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Zoom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폐회 성원 점검을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폐회성원 점검 때 재석이라 하지 않으시면 조퇴 처리됩니다. 현재 시각 23시 04분인데 05분

까지 폐회성원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의사정족수가 11명인데요. 폐회 성원에 9명밖에 없네요. 이러면 저희 회의가 폐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한 중앙운영위원께서는 폐회 성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23시 08분까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수리과학과, 전산학부 재석해 있으면 폐회성원 점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의 참여에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걱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시간 다 되었으므로 폐회성원 점검 마치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으로 폐회성원 점검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시 08분 제2023-16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08 폐회)

결 과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제10조의2제2항 중 “전학대회에서”를 “전학대회에서”로 수정함.
-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12	12	0	0	수정 가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2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2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u>J.H. Han</u>
위 원	이 창 섭	<u>이창섭</u>
위 원	박 세 현	<u>박세현</u>